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엄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39

발의연월일: 2024. 8. 12.

발 의 자 : 엄태영·신성범·김상훈

조지연 • 권영진 • 김예지

박충권 · 김정재 · 최보윤

서천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, 불법하도급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, 현장 내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건설관련 법령을 전문 적으로 숙지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조사·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「건 설산업기본법」,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및 「건설기계관리법」에 규정 된 범죄에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범죄 수사의 효율성 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4.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, 특별시·광역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근무하며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조사·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제6조에 제5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1. 제5조제54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 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
 - 가. 「건설산업기본법」
 - 나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
 - 다. 「건설기계관리법」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	제5조(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
법경찰관리) 다음 각 호에 규	법경찰관리)
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	
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	
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	
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	
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	
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	
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, 8급	
•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	
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	
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	
수행한다.	
1. ~ 53. (생 략)	1. ~ 5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4.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
	<u>관, 특별시·광역시·도 및</u>
	<u>시·군·구에 근무하며 건설</u>
	공사 관련 불법행위 조사ㆍ
	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
	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
	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
제6조(직무범위와 수사 관할) 제	제6조(직무범위와 수사 관할)
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	
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	

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.
1. ~ 50. (생략)
<신 설>

1. ~ 50. (현행과 같음)

51. 제5조제54호에 규정된 사 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 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나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다. 「건설기계관리법」